

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인사지원서(학교교육사항) 작성 가이드
- 일반직 6급 지원자 대상 -

I. 안내 목적

- ‘학교교육’ 사항과 관련, 아래 상세한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사지원서를 작성하여 작성 오류 / 착오 기재를 방지해주시기 바랍니다.

II. ‘학교교육’ 사항의 각 기재항목별 안내

1. ‘학교교육’ 이란?

- (설 명) 우리 원 인사지원서 상의 ‘학교교육’ 은 제도화된 고등교육기관(학교) 내 에서 이루어지는 고등교육과정 을 의미합니다.
- (고등교육기관 예시) 대학교, 대학원, 사범연수원 및 이에 대응하는 해외 교육기관 등
- (예 외) 위 교육기관 외에도 ‘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’ 에 의거하여 취득한 이수학점(ex.학점은행제도)도 포함됨

2. 교육분야 - 기재항목 ①

- (설 명) 우리 원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교육분야를 총 9가지로 정리(아래 <표-1> 참조)한 것으로, 지원자는 자신이 이수한 교과목 중 9가지 교육분야에 속하는 교과목만을 기재할 수 있음

<표-1>

연번	관련 교육분야	과목수 제한
1	공정거래법 분야	5
2	민사법(민법, 상법, 민사절차법) 분야	5
3	기타 법학 방법론, 법학 개론 분야	5
4	경영·홍보 분야	5
5	재무·회계 분야	5
6	경제·정책 분야	5
7	인사·노무 분야	5
8	의사소통능력(문서이해·작성, 의사표현, 논리·사고력) 분야	5
9	대인관계능력(팀웍, 리더십, 심리, 갈등관리, 협상, 고객서비스) 분야	5

- (작성 유의점)

- ① 지원자는 관련 교육분야에 맞게 자신이 이수한 교과목을 기재하여야 함
※ 해당 교육분야와 관련성이 없는 교과목을 악의적으로 기재하는 사례 등이
평가단계에서 발견될 경우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.
- ② 교육분야별 기재 가능한 최대 교과목수 제한(5개)이 존재함
→ 위 <표-1> 상의 ‘과목수 제한’ 및 아래 설명되는 ‘교과목명’ 참조

3. 학력구분 - 기재항목 ②

- (설 명) ‘학교교육’ 을 교육기관별로 구분한 것으로, 지원자는 자신이 기재하고자 하는 교과목의 교육기관을 [대학교, 대학원, 사범연수원, 기타]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됨
- (작성 유의점) ‘기타’ 의 경우 학점은행제도, 해외교육기관 등을 위한 것이므로, 그 이외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 것

4. 교과목명 - 기재항목 ③

- (설 명) 성적증명서 상의 교과목을 기재하는 부분으로, 평가단계에서 증빙자료와의 일치여부를 검토하게 되므로 오차 없이 기재하여야 함
- (작성 유의점)
 - ① 기재 가능한 전체 교과목수는 최대 10개 → 지원자가 이수한 직무관련성 있는 교과목이 10개를 초과하더라도 더 이상 기재할 수 없음
 - ② 위와 같은 ‘전체 교과목수 제한’ 과 별도로 ‘각 교육분야별 교과목수 제한’ 이 존재함(위 <표-1> 참조) → 따라서 특정 교육분야의 제한 교과목수를 모두 채운 경우 해당 교육분야에 속하는 교과목이 더 존재하더라도 추가 기재할 수 없음
 - ③ 특정 교육분야에 기재했던 교과목은 다른 교육분야에서 다시 기재할 수 없음 (교과목 중복기재 금지)
 - ④ 각 교육분야별 ‘예시 교과목’ 은 아래 <표-2>를 참조할 것
※ 아래 제시된 교과목명은 지원자의 작성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므로, 예시 교과목명과 상이하더라도 지원자는 관련 교육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기재할 것. 다만, 아래 명확히 예시된 교과목명을 타 교육분야에 기재할 경우 점수 해당 교과목의 성격과 관계 없이 점수로 인정하지 않음.

〈표-2〉 교육분야별 예시 교과목

· 「분쟁조정」

관련 교육분야	관련 교과목 예시
<p>공정거래법 분야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경제법, 경쟁법, 공정거래법, 가맹사업법, 하도급법, 약관규제법, 대규모유통업법, 대리점법 및 기타 이에 해당하는 과목
<p>민사법(민법, 상법, 민사절차법) 분야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민법총칙, 물권법, 채권법, 계약법 및 기타 이에 해당하는 과목 · 상법총론, 회사법, 어음수표법, 보험법 및 기타 이에 해당하는 과목 · 민사소송법, 민사집행법, 보전소송, 대체적 분쟁해결제도(ADR) 및 이에 해당하는 과목 · 민사재판실무, 민사변호사실무 기타 이에 해당하는 과목
<p>기타 법학 방법론, 법학 개론 등 <u>법학 기본 소양</u> 분야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법률조사방법론, 법률문장론, 법학개론, 법학입문, 법학통론, 생활과법, 법과사회 및 기타 이에 해당하는 과목 (교양 수준의 법학과목 포함)

· 「경영·회계·사무 업무」

관련 교육분야	관련 교과목 예시
경영·홍보 분야	· 경영학원론, 경영전략, 기업성장및혁신전략, 기업윤리, 기업경영, 비즈니스전략, 기업윤리, 기업이해 및 기타 이에 해당하는 과목 · 광고효과이론, 정책홍보론, 광고홍보특별연구, 매체기획, 언론학, 홍보학 및 기타 이에 해당하는 과목
재무·회계 분야	· 관리회계, 회계원리, 재무관리, 경영정보시스템, 경영정보처리, 원가회계, 고급회계, 세법개론, 중급회계, 회계감사, 경영통계, 기업재무, 예산과 회계, 원가관리회계, 세무회계, 비영리회계, 법인세법, 조세법 및 기타 이에 해당하는 과목
경제·정책 분야	· 경제학입문, 경제(학)원론, 미시·거시경제이론, 경제통계, 법경제학, 공공경제, 경제이해, 재정학, 정책학, 예산과 재무관리, 정책기획론, 정책분석론, 정책형성론, 정책평가론, 정책집행론, 공공부문의 경제적 분석, 공기업론, 비교정책론, 경제정책, 공공관리 경제학, 공기업의 이해와 관리, 행정학, 정부예산론, 재무행정 및 기타 이에 해당하는 과목
인사·노무 분야	· 노동법, 개별노사관계법, 근로기준법, 집단노사관계법, 노동쟁의법, 조직론, 조직행위론, 조직구조론, 조직이론, 인사관리, 노사관계론, 노동경제학, 조직설계, 조직행동론, 인사조직, 조직과환경, 조직관리론, 인사행정, 노동행정 및 기타 이에 해당하는 과목

· 「직무공통(직무기초능력 관련)」

관련 교육분야	관련 교과목 예시
의사소통능력(문서이해·작성, 의사표현, 논리·사고력) 분야	· 글쓰기 관련 과목, 말하기 관련 과목, 토론 관련 과목, 논리·사고력 관련 과목 및 기타 이에 해당하는 과목
대인관계능력(팀웍, 리더십, 심리, 갈등관리, 협상, 고객서비스)분야	· 갈등관리와 협상, 설득커뮤니케이션, 글로벌리더십, 심리학, 협상학, 및 기타 이에 해당하는 과목

5. 이수학점(이수단위수) - 기재항목 ④

- (설 명) 성적증명서 상의 이수학점을 의미
- (작성 예시) 3학점, 2학점 등으로 기재(이수단위의 경우 4단위, 2단위 등)

6. 성 적 - 기재항목 ⑤

- (설 명) ‘총점’ 은 해당 교과목의 만점 점수(4.3, 4.5, 4.0, 100 등)를 의미하며, ‘성적’ 은 지원자 자신이 얻은 점수를 의미함

- (작성 유의점)

① ‘총점’ 을 선택함에 있어 “성취도” 및 “등급평가” 는 해외유학 지원자를 위한 것이므로, 대졸(예정) 이상 지원자는 사용하지 말 것

② 성적은 **숫자로만 기입 가능함** → 따라서 숫자가 아닌 성적등급(ex. A, B+ 등과 같은 알파벳 등급)은 숫자로 변환하여 기입하여야 함(아래 <표-3> 참조, 패스 / 논패스 과목은 기재할 수 없음)

※ 해외유학 지원자로서 ‘총점’ 을 “성취도” 및 “등급평가” 로 선택한 경우에는 숫자로 기입하지 않아도 무방함

※ **총점과 성적을 바꾸어 오기제하는 경우, (예 : 총점 4.0 / 성적 4.5) 해당 점수는 0점으로 처리됨.**

<표-3>

알파벳 등급 변환 예시		
구 분	4.3 만점 기준	4.5 만점 기준
A+	4.3	4.5
A0	4.0	4.0
A-	3.7	-
B+	3.3	3.5
B0	3.0	3.0
B-	2.7	-
C+	2.3	2.5
C0	2.0	2.0
C-	1.7	-
D+	1.3	1.5
D0	1.0	1.0
D-	0.7	-
패스 / 논패스 과목은 기재할 수 없음		

* 위 변환표는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, **지원자는 반드시 해당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학점 등급체계(성적증명서 또는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)를 참조**하여 숫자로 변환하시기 바랍니다.

7. 주요내용 - 기재항목 ㉔

- (설 명) 해당 교과목의 ‘교육분야’와의 관련성을 기재하는 부분임
- (작성 유의점) 교과목명만으로 해당 교육분야와의 관련성 유무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‘주요내용’ 항목을 통해 관련성 여부를 소명할 것
 - ※ 교과목명이 ‘예시 교과목명’ 과 동일·유사한 경우에는 주요내용 생략 가능